



5. 가입자정보 및 부담금입금 정보

가입자수	명	기업부담금 합계	원
등록정보	<input type="checkbox"/> 일괄등록(가입자명부 파일 및 부담금명부 파일 작성) * 별도첨부 엑셀파일 징구하여 본 신청서와 간인 <input type="checkbox"/> 개별등록(아래표 작성) *칸이 부족한 경우 가입자등록/변경/삭제 신청서 징구하여 본 신청서와 간인		
기본정보		당해년도 포함 최근 4년간 임금총액정보	신규시 기업부담금액
- 성명 :		1) 20   년    원	원
- 주민등록번호 :		2) 20   년    원	
- 입사일자 :    - 중간정산일자 :		3) 20   년    원	
- 사원번호 :    - 임직원 구분 :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4) 20   년    원	
- 성명 :		1) 20   년    원	원
- 주민등록번호 :		2) 20   년    원	
- 입사일자 :    - 중간정산일자 :		3) 20   년    원	
- 사원번호 :    - 임직원 구분 :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4) 20   년    원	
- 성명 :		1) 20   년    원	원
- 주민등록번호 :		2) 20   년    원	
- 입사일자 :    - 중간정산일자 :		3) 20   년    원	
- 사원번호 :    - 임직원 구분 :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4) 20   년    원	
- 성명 :		1) 20   년    원	원
- 주민등록번호 :		2) 20   년    원	
- 입사일자 :    - 중간정산일자 :		3) 20   년    원	
- 사원번호 :    - 임직원 구분 :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4) 20   년    원	

\*자동이체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DC기업부담금 자동이체 신청 시에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시 계정단말 5005 별도 등록 필요)

6. 서비스 신청

(DC,기업형IRP) 퇴직연금 수수료 자동이체 / (DC) 기업부담금 자동이체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	퇴직연금 수수료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없이 계약응당일에 지정하신 계좌에서 퇴직연금 수수료를 자동출금하여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출금계좌번호	*하나은행 기업명의 본인계좌만 가능			
<input type="checkbox"/> 신청	DC 기업부담금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없이 기업부담금을 매월 지정하신 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가입(근로)자 계정에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형IRP의 경우 자동이체 요청시 신청서 별도 제출)				
		이체일	매월	일(1~5일 불가)	이체개시일	이체종료일
		출금계좌번호	*하나은행 기업명의 본인계좌만 가능			

(DC, 기업형IRP) 기업부담금, 퇴직연금 수수료 연동납부 신청			
손님이 요청하신 날짜에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작성없이 (무통장 · 무인감) 출금 처리하여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신청	퇴직연금 수수료	출금계좌번호	*하나은행 기업명의 본인계좌만 가능
<input type="checkbox"/> 신청	기업부담금	출금계좌번호	*하나은행 기업명의 본인계좌만 가능

※ 유의사항

- 1) 본 신청과 별도로 기업부담금 입금 요청시마다 '퇴직연금 부담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뱅킹으로 입금시 제외)
- 2)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기업부담금은 가입(근로)자 계정에 입금 처리하고, 퇴직연금 수수료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 3) 출금계좌의 지급 가능 잔액이 없는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연동 납부 요청시 출금 가능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출금계좌에 한도대출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출한도는 출금 가능 잔액으로 간주합니다.
- 5) 기업형IRP는 신청시점 정상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등록(신청, 변경, 취소) 됩니다. 가입자가 추가되면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운용가능한 상품 라인업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회사가 운용상품을 한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운용상품지정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과 퇴직연금 수수료 자동출금 서비스 약관,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자동이체 약관에 동의하며, 부담금 및 수수료 연동납부 안내, 상품 가입 고객확인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서, 신청서 사본을 수령하였기에 위와 같이 하나은행과 퇴직연금 거래를 신청합니다.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	-------	-----------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도장, 서명 가능)



## 퇴직연금 수수료 자동출금 서비스 약관

준법감시인 심사필 약관-14-72(2014.6.02)

###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자동출금 신청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은행간에 체결한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적용합니다.

### 제2조 (자동출금 신청·변경 및 해지)

- ① 납부자가 퇴직연금 수수료 자동출금 서비스를 이용·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퇴직연금 수수료 자동출금(신규·변경·해지)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자동출금 서비스를 변경·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금일 제2영업일까지 제1항의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지시의 철회로 봅니다.
- ③ 납부자가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 서비스는 제1조의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 (자동출금 대상 수수료)

- ① 자동출금 대상 수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말합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수수료
  3.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수수료
  4.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수수료
- ② 납부자는 이체일 18:00시까지 제1항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자가 지정하여 신청한 출금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제4조 (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 제5조 (출금일)

출금일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체결한 해당일로 자동 지정됩니다. 다만, 체결일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로 합니다.

### 제6조 (출금방법)

- ① 제3조제1항의 수수료는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없이 매년 출금일에 납부자가 신청한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은행이 취득합니다. 다만, 출금일에 출금계좌 잔액부족 시 수수료 자동출금 처리가 되지 않으며 출금일 이후 매 영업일에 잔액을 확인하여 잔액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만 출금합니다.

- ② 출금계좌가 유동성한도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 제7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할 경우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납부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납부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납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납부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납부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8-약관-106 호(2018.9.11)

### 제1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계좌간 이체를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 지급표를 징구하지 않고 사전에 신청한 방법에 따라 정해진 계좌간에 이체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 (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 제3조 (신청, 변경 및 해지)

- ① 사용자가 (자동)이체 신청서에 의해 계좌간에 이체 처리하는 업무를 신규 및 변경, 해지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지정일 전영업일(이체 지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까지 할 수 있습니다.
- ② 입금계좌는 사용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제4조 (출금)

- ①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



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이체 대금은 이체지정일 또는 이체지정일의 익영업일 17시까지 입금할 경우에 이체 처리 합니다.

③ 이체지정일 또는 이체지정일의 익영업일에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금액에 미달 하면 이체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 체분을 포함한 잔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⑤ 이체지정일(지정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말일 영업일)이 휴일 등 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영업일에 이체 됩니다. 다만,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 됩니다.

### 제5조 (최초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예금주가 최초 이체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6조 (과실책임)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잔액증명서 발급, 연체, 법적제한 등 예금주의 과실에 의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7조 (출금우선순위)

같은 날에 이체 대상이 여러건 있는데, 다른 자동이체가 우선하여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제8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계좌이동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

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10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계좌간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 [DC기업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1. 자동이체 주기는 매월로만 가능합니다.
2. 자동이체 대금은 이체지정일 또는 이체지정일의 익영업일 17시까지 입금할 경우에 자동이체 처리 합니다.
3. 이체지정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자동이체 처리되며,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4. 이체일 당일은 퇴직급여지급, 계약이전, 중도인출 등 거래가 제한됩니다.
5.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진행중인 가입(근로)는 자동이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전체 가입(근로)자가 아닌 일부 가입(근로)자만 자동이체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부담금 미납 발생시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7. 기존에 신청한 자동이체 대상 가입(근로)자의 변경은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8. 다른 자동이체(예: 신용카드결제대금, 대출이자 등)가 우선 출금될 수 있습니다.
9. 출금계좌에 한도대출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출한도는 출금가능 잔액으로 간주합니다

